2025년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2차)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5년도 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창 원 시 장

- 1. 사 업 명 :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 2. 사업목적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 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3. 신청기간 : 2024. 12.12. ~ 2024. 12.18. (7일간)

4. 신청자격 및 요건

- ㅇ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 '25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85.1.1. ~ 2007.12.31. 출생자
 - * 선발 시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 기간 중 40세를 넘어도 3년차까지 지급 기능
- o (거주지) 영어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ㅇ (어업 및 양식업 경영경력) 어업 및 양식업 경영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 어업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의 정의에 따름
- * 어업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영어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본인이 직접 영어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산정기준은 ①면허, 허가어업 등 취득일 ②어업경영체 등록일 ③사업자등록일 등으로 확인 후 가장 먼저 취득한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 2025년도 사업 시행 시 경력 1년차(2024.1.1.이후 등록자 ~ 2025년 예정자), 2년차(2023.1.1.~12.31.등록자), 3년차 (2022.1.1.~12.31.등록자)

- o (수산물 가공·유통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 수산물 가공업 및 유통업은「수산업법」제2조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를 준용
-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ㅇ (해양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 * 해양레저관광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사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 해양레저관광업은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2조를 준용
- * 해양레저관광업 경력 산정기준은 사업자등록일 등 확인 가능한 서류 날짜를 기준으로 산정
- ㅇ (병역)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사업 선정 제외대상

-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 2. 농어업 외의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 3. 병역미필자
 - 4.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 5.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경우
 - 6.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구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본인부담액	부과액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04,986원	271,091원	314,423원

- 7. 고등학교 ·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ㅇ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 o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에서 제외

5. 지원형태, 한도 및 사용용도

- ㅇ 창업초기 어촌정착지원금(월110만원 이내)
 - 어업경력 1년 이하(월 110만원), 2년 이하(월 100만원), 3년 이하(월 90만원)
 - 사업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비 소진시 사업 조기 종료 가능
- ㅇ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다만,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
 - 유흥, 사치품 및 술·담배의 구매,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6. 접수장소 : 창원시청 수산과(제2별관 1층)

- 사업 신청자격과 요건을 모두 갖춘 신청인은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1호)등 제반서류 방문제출
 -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055-225-338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 지급대상자 의무사항 및 제재조치

- 정착지원금 수령자는 아래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고, 위반 시 시·군·구는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 제재 대상이 있을 경우. 시·군·구는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소명기회(15일 이내)부여
 - 사업 대상자로 선발된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지원금 수령 시점부터 의무 부여
 - 단, 수산업 창업 예정자는 사업 시행연도 12월말까지 창업을 미이행할 경우 사업 대상자 선정을 취소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 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 *	당해 연도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수산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 (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 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수산업경영 의무 종사기간 (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수산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수산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 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수산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 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8. 신청 서류

- ㅇ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동의서
- ㅇ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또는 제2호의2 서식)
- O 어업 또는 양식업 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분야)
- ㅇ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0 가족관계증명서
- O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예정자인 경우)
 -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 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 * 금융기관 신용정보조회 결과, 신용제한정보(연체기록 등)가 없는 자여야 함
 - * 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제출을 생략하되 연내 어업경영체 등록 후 서류를 보완(연내 어업경영체 미등록 시 보조금 환수)
- 붙임 1.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 2. 2025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지침 1부. 끝.